

---

# 3개 역사 철골도장 보수공사 시방서(안)

---

2021. 10.

# 일 반 시 방 서

## 1. 적용범위

- 1.1. 본 시방서는 부산-김해경전철(주)(이하“발주자”라 한다) “3개 역사 철골도장 보수공사 계약”에 필요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1.2. 본 계약에 있어 해석 및 문서의 우선순위는 관계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시방서, 계약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.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으며,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.
  - 가) 건설기술진흥법, 동 시행령, 시행규칙
  - 나) 건설산업기본법, 동 시행령, 시행규칙
  - 다) 건축법, 동 시행령, 시행규칙
  - 라) 산업안전보건법, 동 시행령, 시행규칙
  - 마) 경전철 건축시설관리규정, 시행내규
  - 바) 기타 관계법령

## 2. 사업개요

- 2.1. 공사명 : 3개 역사 철골도장 보수공사
- 2.2. 공사 기간 : 착공일로부터 24일간 (계약시 협의 후 조정가능)
- 2.3. 공사 장소(승강장) : 서부산유통지구역, 공항역, 덕두역

## 3. 용어의 정의

- 3.1. “발주자”라 함은 부산-김해경전철(주)를 말한다.
- 3.2. “계약상대자”라 함은 부산-김해경전철(주)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3.3. “감독자”라 함은 해당 공사를 설계도, 시방서, 계약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그 감독 업무를 “발주자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.

## 4. 참가 자격

- 4.1. 철골 도장공사 가능 업체
- 4.2. 현장설명회 개최 : 참가자에 한해 응찰가능
  - ※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작업현장 여건 사전안내 필요

## 5. 문구 해석

- 5.1. 본 시방서에 의거 구매 및 설치되어야 하며,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르고,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“발주자”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## 6. 계약이행 및 책임

- 6.1.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건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, 제품 검수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한다.
- 6.2.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및 설치제품의 완전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“발주자”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6.3. 납품은 일괄납품으로 하고 납품기한 연기가 필요시에는 “발주자”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6.4. “계약상대자”의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대상 시설의 사용 이전에 보수, 복구 완료되어야 하고, 이의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진다.
- 6.5.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.
- 6.6. 작업 시 각종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손상 시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6.7. 관련된 모든 도면과 관련 자료를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“발주자”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작업일지라도 성능에 결함이 있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.
- 6.8. “계약상대자”는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중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승인·검증 기관으로부터 시공품질 및 성능검증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자재에 대하여는 납품 전에 인·허가를 득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기자재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6.9. “계약상대자”는 공사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.

## 7. 계약의 해지 및 일시정지

- 7.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“발주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.
  - 2)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.
  - 3)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.
  - 4)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“발주자”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.
  - 5)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.

- 6) “발주자”는 이 계약의 이행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통상적 업무수행을 통해 당초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점 해소 시까지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.

## 8. 시험 및 검사

- 8.1.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와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며,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8.2. 시험 및 검사는 “발주자”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며, 제반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 부담으로 하고, 당해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.

## 9. 안전관리

- 9.1. “계약상대자”(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작업자)는 본 공사 작업 시 공사 중 인원통제 및 안전시설을 완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사고발생에 대한 민,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다.

## 10. 보안사항

- 10.1.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, 구매 및 설치 중 습득한 문서 등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,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.
- 10.2. “계약상대자”는 출입직원의 신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출입 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을 진다.
- 10.3. 본 교체공사에 참가하는 인원은 사전에 출입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0.4. 본 작업을 위한 출입은 허가된 구역에 한하고, “감독자”의 인솔 하에 이동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현장이탈 및 이동, 배회를 금지하여야 한다.

## 11. 제출서류

- 11.1. “계약상대자”는 아래 자료를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) 인원, 공사, 시험 계획을 포함한 착공계(계약 후 10일 이내)
  - 2) 승인용 도면 및 관련 자료(승인용 자료 제출 시)
  - 3) 안전관리계획(현장 설치작업 전)
- 11.2. 공사완료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아래 자료를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) 필요 시 납품증명서 및 시험성적서(1부) : 현장 반입/설치 도장재

- 2) 준공계, 준공도면, 시험결과보고서 및 공사(전, 후) 사진대장(1부)
- 3) 하자이행보증증권(1부)
- 4) 그 외 공사관련 인증서 (1부)

## 12. 품질 보증기간

- 12.1. 이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이 기간내 설계, 제작, 설치 또는 장비, 설비 등의 결함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 무상으로 즉시 교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.

## 13. 기타사항

- 13.1.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 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, "발주자"가 지명한 "감독자"의 판단에 의해 불안 전 요소가 발견될 시는 "감독자"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"발주자" 또는 "계약상대자"의 손실을 전액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한다.
- 13.2. 작업은 2인 이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, 작업 후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.
- 13.3.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하고, 인화물질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
- 13.4. 타 시설물, 장비, 설비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,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성능이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# 특수시방서

## 1. 일반사항

- 본 시방서는 “3개 역사 철골도장 보수공사”에 적용한다.
- “계약상대자”는 건축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KS제품이 없을 시에는 품질이 KS품 동등이상 또는 감독원의 확인품으로 한다.
-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맞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출한다.
- “감독자”은 부당한 행위와 부적합한 현장종사자에 대해 즉시 교체,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해당부서에 사용상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협의하고,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“감독자”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 후 공사에 임한다.
- “계약상대자”는 작업광경을 전, 중, 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“감독자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사 시 먼지, 진동,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공, 절단 작업은 별도의 공간(승객 및 직원의 피해가 없는 장소)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- 일일작업 종료 시 공사장 내를 정리 정돈 및 청소 하고,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, 작업종료 전이라도 “감독자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하며, 폐기물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.
-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 현장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본선 선로는 “감독자”의 단전 확인 후 진입하여 작업해야 하며, 선로 내 작업 중지 및 이탈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따라야 한다.
- 본선 선로 상부 작업 후 철수 시 진입 시 소지하였던 재료, 공기구, 장비, 폐기물 등은 빠짐없이 선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승객의 안전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시행한다.
- 기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“감독자”와 협의한 후 진행한다.

## 2. 시 공

### 가. 주요자재

공 종	품 명	규 격	비 고
철골 도장	프라이머	에폭시계 프라이머 (EP1730 성능이상)	
	상도 페인트	우레탄계 상도 (UT6581 성능이상)	

### 나. 칠공사

- 도장작업 전 주변시설물을 보양하여 페인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및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피도장면의 유분, 수분, 먹지, 녹, 기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장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.
- 도장작업 시 과다수분 주의 및 적정 도막두께로 시공 / 기후 조건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.
- 도장의 두께는 하도 75 $\mu$ m이상, 상도 50 $\mu$ m 이상의 건조 도막두께가 나오도록 시공한다.
- 도장면은 모여들기, 얼룩, 흘러내림, 주름, 공극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.

## 3. 작업안전

- 안전모, 안전벨트, 안전그네, 안전안경,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작업 전에 반드시 착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주간작업 시 고객이동 동선과 작업 공간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실시한다.
- 공사관련 민원 발생시 “계약상대자”가 즉시 해결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강관틀비계, 레일대차, 고소작업대 등의 설치/해체 및 이동, 조작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.
- 강관틀비계, 레일대차, 고소작업대 등의 상부에서 실시하는 고소작업 시 안정된 바닥면에 단단히 고정하여 전도, 추락, 낙하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강관틀비계, 레일대차, 고소작업대 등의 이동 시에는 상부에서 작업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.

- 본선 선로 내부(승강장 PSD 끝선 기준 선로 측)로는 “감독자”의 허가 없이는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본선 선로 내부(승강장 PSD 끝선 기준 선로 측)로는 “감독자”의 허가 없이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, “감독자”의 이탈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탈하여야 한다.
- 작업 종료 후 본선 선로 이탈 시에는 내부의 재료, 공기구, 장비, 폐기물 등을 빠짐없이 선로 외부로 반출 하여야 한다.